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 판 결

| | |
|---|---|
| 사 건 | 2024가단226446 손해배상(기) |
| 원 고 | 1. 주식회사 A<br>2. B<br>3. C<br>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신원<br>담당변호사 김진욱, 우지현, 김채영 |
| 피 고 | D<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br>담당변호사 이동규, 양다윤 |
| 변 론 종 결 | 2025. 1. 17. |
| 판 결 선 고 | 2025. 2. 14. |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000,000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3.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9.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22.부터 각 2025. 1.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2.부터 2025.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2025.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2)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하고, (3)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000,000원과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2.부터,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3.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9.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22.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2.부터, 원고 C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원고 B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2.부터, 원고 C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B과 원고 C이 소속된 아이돌 그룹 'E'의 멤버들을 발굴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트레이닝, 앨범 발매, 방송 출연, 공연, 브랜드 관리, 마케팅 등 연예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여 E을 키워낸 연예 기획사이다.

나. 피고는 2021. 4.경부터 2023. 6.경까지 익명으로 유튜브 'F 채널'(이하 'F'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다. 2013년 데뷔한 E은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상들을 게시할 당시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며 대한민국 음악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높은 상업적 성공을 거둔 K-POP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라. 피고는 F 채널에 2021. 11. 22. 별지 1의 내용으로 된 영상을, 2021. 11. 23. 별지 2의 내용으로 된 영상을, 2022. 2. 19. 별지 3의 내용으로 된 영상을, 2022. 2. 22. 별지 4의 내용으로 된 영상(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영상'이라 하고, 전체를 칭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때는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각 영상에서는 E 멤버 개인 또는 원고 회사에 의하여 촬영된 E 멤버들 사진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제1 영상에서는 3장의 사진(갑 제24호증의 1 내지 3[1]), 이 사건 제2 영상에서는 2장의 사진(갑 제24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5[2]), 이 사건 제3 영상에서는 7장의 사진(갑 제24호증의 5, 6, 8 내지 11, 갑 제23호증의 8), 이 사건 제4 영상에서는 9장의 사진(갑 제24호증의 14, 15, 18 내지 24)이 각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진들의 상당수는 E 공식 트위터 계정이나 포스터, E 화보집, 앨범 등에 사용되거나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된 것이었다.

마. 한편, 피고는 F를 운영하며 가수 G, 여성 아이돌 그룹 H의 멤버인 I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다만, I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B이 J[3] 시상식에서 스태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제1 영상에 의하여 원고 B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원고 C의 솔로곡 K에 대한 원고 회사의 사재기 음원 다운로드가 심하고, 사재기 다운로드 덕에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제4 영상에 의하여

1) 갑 제24호증의 2 사진은 이 사건 제2, 4 영상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갑 제23호증의 5 사진이 이 사건 제1 영상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나(2024. 12. 30.자 준비서면 제13면), 위 사진은 이 사건 제2 영상에 사용되었다.
3) L의 약자이며, 권위 있는 미국의 음악시상식이다. E은 2021. 11.경 J에서 'M'로 선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원고 C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 B과 원고 C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일부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 영상은 'E이 미국 M 상을 수상한 것은 틱톡 어플 100% 투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국으로 바뀌었고, 천하의 미국이 결국 돈에 굴복해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 틱톡 투표로 전락했다. J는 틱톡에 먹혔고, 그 권위를 상실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 제3 영상은 'N'라는 제목으로 'E 멤버들의 군 입대가 시작되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문제되고 E의 해체가 가까워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3, 4 영상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을 핵심 자산으로 삼아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일부로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원고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E 사진 21장(제1 영상 : 4장, 이 사건 제2 영상 : 1장, 이 사건 제3 영상 : 7장, 이 사건 제4 영상 : 9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사진 이미지 1장당 1,0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무단 사용한 E 사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진에 대한 원고 B, C의 초상권은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사진 21장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 B, C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B, C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오로지 수익 창출만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지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유명 연예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 4 영상의 내용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 내로서 위 각 영상에 의하여 원고 B, C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개인 유튜버에 불과한 반면 원고 회사는 세계적인 가수의 소속사이자 대기업인바,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각 영상에 의하여 원고 회사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법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프리소스 팬 사인회 사진, 오픈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사진, 편집 어플로 변형한 사진만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사용된 사진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다.

6)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청구금액은 과도하다.

**3. 판 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가.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제1, 4 영상의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 영상의 내용은 "원고 B이 J 시상식에서 스태프에게 '아이씨'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4 영상의 내용은 '원고 C의 솔로곡 K는 다운로드 수만 월등히 높고, 실제로 이용자가 음원을 듣는 스트리밍과 라디오 송출 횟수는 현저히 적은데, 이는 원고 회사에서 빌보드 순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원 다운로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으로 모두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며, 이는 단순한 의견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1, 4 영상의 끝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단지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4 영상에 의하여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4)]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 B이 J 시상식에 참가할 당시 팬들에게 '하이(Hi)'라고 짧게 인사하였을 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영상에서 '전부터 인성 논란이 있었던 원고 B이 자신의 음료수가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이씨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② 원고 C의 솔로곡 K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Spotify) 집계 기준, 발매 3일 만에 누적 스트리밍 1,360만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 4 영상에 의하여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이상, 단순한 의견 개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을 넘어섰고, 발매 후 43일에는 7,000만 이상의 누적 스트리밍을 기록함으로써 한국 OST와 남자 솔로곡 중 최단 스트리밍을 경신하였고, 원고 회사가 음원 사재기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4 영상에서 '원고 회사가 음원 사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 B, C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4 영상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운영한 'F'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관한 미확인 정보에 기초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를 선정하여 짜깁기한 콘텐츠 등을 게시하여 공격 혹은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빠르게 견인하면서 조회수, 댓글수를 증가시켜 수익을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인 점[5], ② 피고가 운영한 'F'에서의 'O'은 '어떤 분야나 사람에 대하여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각 영상 외에도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현재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들을 제작할 당시 다양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들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 댓글이 매우 많아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또한, 피고 제출의 을 제1, 2호증은 2017. 1.경의 상황에 관하여 것으로, 원고 C이 'K'라는 솔로곡을 발표하거나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제4 영상을 게시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을 제1, 2호증을 '이 사건 제4 영상의 내용이 진실이다'고 믿게 된 근거로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F 채널에 이 사건 각 영상들과 같이 유명 연예인들을 폄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들을 다수 게시하고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게끔 하였고, 이러한 멤버십 수입과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검찰 발표 자료(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얻은 수익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 스스로

5) 피고와 같은 유튜버를 지칭하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는 위와 같이 논쟁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렉카(견인차)에 빗대어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도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2024. 10. 24.자 준비서면 제1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 영상에서 '원고 B이 J 시상식에서 스태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 사건 제4 영상에서 '원고 C의 솔로곡 K에 대한 원고 회사의 사재기 음원 다운로드가 심하고, 사재기 다운로드 덕에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바(음원 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침해받는 명예훼손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위 각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위 각 영상의 게시 기간, ② 피고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4 영상을 게시하였을 뿐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가 F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2. 3. 기준 피고가 운영한 F 채널의 구독자는 약 4만 4,400명에 이르고, 위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의 조회수는 적게는 10만 단위, 많게는 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확산·전파가 매우 쉬운 유튜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4 영상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④ 원고들은 세계적인 유명 연예인이고, 유명 연예인의 경우 대외적 이미지가 한 번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점, ⑤ 피고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 원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영상 게시일인 2021. 11. 22.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영상 게시일인 2022. 2. 22.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

1) 명예와 신용 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또한,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한편,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제2 영상은 'E이 미국 M 상을 수상한 것은 틱톡 어플 100% 투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국으로 바뀌었고, 천하의 미국이 결국 돈에 굴복해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 틱톡 투표로 전락했다. J는 틱톡에 먹혔고, 그 권위를 상실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국으로 바뀌었다거나 중국계 자본에 굴복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J의 투표 방식 변경이 미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 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상식을 국제정치와 연계시키며 추측으로 만들어 낸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그 덕분에 E이 위 상을 수상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J 시상식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E의 성과를 폄훼하였다. ② 이 사건 제3 영상은 'N'라는 제목으로 E 멤버들의 군 입대가 시작되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문제되고 E의 해체가 가까워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영상 게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 E은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멤버들의 군 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대 전후에도 원고 회사와의 계약 문제는 발생한 바 없다. ③ 이 사건 제4 영상의 내용은 '원고 C의 솔로곡 K는 다운로드 수만 월등히 높고, 실제로 이용자가 음원을 듣는 스트리밍과 라디오 송출 횟수는 현저히 적은데, 이는 원고 회사에서 빌보드 순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원 다운로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지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제 2, 3, 4 영상에 의하여 적시한 내용은, 원고 회사의 영업과 경영 전략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E을 활용한 원고 회사의 연예매니지먼트 업 등의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 및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제시 없이 위 각 영상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업무 또한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제2, 3, 4 영상의 내용,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의 원고 회사의 지위 및 원고 회사 내에서 E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F 채널에 게시한 영상물당 적게는 10만 단위, 많게는 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영상(이 사건 제4 영상) 게시일인 20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2. 22.부터[6]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사용된 사진의 경우, 그 상당수가 E 공식 트위터 계정이나 포스터, E 화보집, 앨범 등에 사용되거나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촬영 대상이 되는 E 멤버들의 표정, 포즈, 시선 등이 사전에 계획되고,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현상과 인화 및 결과물에 대한 보정 과정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사용된 사진의 경우, 누가 촬영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위 촬영이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하여졌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세계적인 K-POP 아이돌 그룹인 E의 멤버 전체 또는 그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난 것으로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또한 E과 원고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E의 소속사인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프리소스 팬사인회 사진, 오픈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사진, 편집 어플로 변형한 사진만을 이용하였고, 사진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7], 제35조의5(저작물의 공

6) 원고 회사는 2021. 11.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4 영상 게시일은 2022. 2. 22.인바, 원고 회사의 위 청구는 착오로 보인다.

7)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정한 이용)[8]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들을 프리소스로 풀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설령, 피고가 사용한 사진들이 편집을 거친 것들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립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원고 회사의 사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원고 회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진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5조의5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

8)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원고 회사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저작물에 대하여 장당 1,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25호증),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합계 51,000,000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영상 게시일인 2021. 11. 2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영상 게시일인 2021. 11. 23.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영상 게시일인 2022. 2. 19.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4 영상 게시일인 2022. 2. 22.부터 각 2025.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202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별지 1>

# 이 사건 동영상 1 의 내용

| | |
|---|---|
| 캡처화면 | |
| 제목 | |
| 내용 | ○이 ○에서 올해의 ○을 수상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걸까요.<br>오늘 영상은 최근 올랐던 ○ 승무원 폭로 영상과 이어집니다.<br>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 멤버 중 인성 별로인 멤버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로 추측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또 ○와 관련된 일이 터졌습니다.<br><br>틱톡 공식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발단인데요, 틱톡은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그런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는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고 앞의 남자 관계자는□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기가 찬 듯이 "아이씨"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는□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수상을 할 때는 혼자만 나올 정도로 좋아하더니 무대 뒤에서는 다른 모습이네요. 관계자의 손에는 음료수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는 작아서, 6 개의 음료수만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는 자기 것이 없자 여기에 화가 나서 팔짱을 끼고 시선마저 돌려버린 것 같네요.

관계자가□멤버들에게 음료수 박스를□과□은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도□를 제외한 다른□멤버들은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월드스타로서 화답을 했고□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팔짱을 그대로 그대로 유지한 채 외면하던 시선을 돌려, 살짝 음료수 박스를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위선양을 하는 타지 이국에서 꼭 저렇게 인성 나쁜 짓을 했어야 했냐고 말이죠.

영상을 보니까 승무원들이 입을 모아 말한 인성 별로인□멤버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어딜 가든 직원이나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성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잘 나간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스테이지 관계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 | |
|---|---|
| | 에게 하는 짓을 보니까 여태 □의 병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끄덕끄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br><br>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별지 2>

## 이 사건 동영상 2의 내용

| | |
|---|---|
| 캡처화면 | |
| 제목 | |
| 내용 | 이 아시아 최초로 에서 사실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을 받았는데요.<br>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수상 축하합니다.<br><br>그런데 이 시상식에서 이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어떻게 대상을 탔을까. 많은 분들이 대상 탔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br>는 올해, 전문가 투표를 없애고 틱톡 어플 100% 투표로 수상자를 결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정했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의 [ ]에도 전문 심사위원과 음반 음원 판매량이 들어가는데 이번 [ ]는 100% 틱톡 투표로 [ ]은 대상을 샀습니다. 틱톡은 [ ]의 큰 스폰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개겠죠.

[ ] 후보는 정말 쟁쟁했는데요. [ ], [ ], [ ], [ ], [ ], [ ], [ ]가 있었고 [ ]이 대상을 탔습니다. 역대 [ ] 수상자 명단은 이렇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좀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 ]는 꽤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며? 틱톡 투표로 상을 주는 게 말이 돼? 하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3 대 음악 시상식은 [ ] [ ] [ ]입니다. **그런데 [ ]는 중국의 틱톡에 결국 먹힌 것 같네요.**

**한국으로 치면 100% [ ] 투표로 대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결국 돈에 굴복해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 틱톡 투표로 전락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틱톡을 사용 금지한다고 할 정도로 싫어했는데요. **틱톡의 개인 정보 유출 이슈 또한 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국으로 바뀌었고 권위 있는 미국 음악 시상식은 결국 틱톡 투표가 돼버렸네요**.

전문위원단의 의견이나 음반 판매 음원 순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로지 100% 틱톡 어플 사용자들의 투표하면 결정되는 거죠.
[ ]를 지금도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별지 3>

# 이 사건 동영상 3 의 내용

| | |
|---|---|
| 캡처화면 | |
| 제목 | |
| 내용 | **[ ]의 해체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입니다.**<br>[ ]은 3 월 달에 오랜만에 대면 콘서트를 하는데요.<br>늘 그랬듯이 이 콘서트 이후 월드투어를 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콘서트를 파이널로 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br>[ ]은 애초에 2018 년도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 기간은 2024 년까지로 알려졌습니다.<br>하지만 맏형 [ ]은 올해 한국 나이로 31 살이라 더 이상 군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논란이 많던 군면제는 올해 [ ]이 군대 가는 걸로 확실시됐고[ ]만 군입대를 할지, 멤버들이 동반 입대를 할 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군대는 보통 1 년 6 개월 정도 다녀오기 때문에 콘서트 투어가 끝난 뒤 간다고 가정했을 때 2023 년 말에 제대합니다. 그럼 **계약 기간이 2024 년 1 월인지, 2024 년 12 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 ]의 활동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022 년이 [ ] 완전체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 불을 지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 ]의 새 앨범 유출인데요, 인터넷에[ ]의 새 앨범이 유출됐습니다. 앨범명은 [ ] 고, [ ]으로서 마지막 앨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팬들은 아쉽다는 반응과 [ ] 소속사가 너무 싫어서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차라리 솔로가 낫다는 개인 팬들도 있으니까요
또 [ ]의 단체 활동이 끝나는 게 확실시된 증거 중 하나는 [ ]의 자체 콘텐츠 '[ ]'이 끝났다는 건데요. [ ]은 꾸준히 해오던 [ ]의 콘텐츠인데 2021 년 10 월을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을 가진다고 했지만 어제인 2 월 17 일 [ ]은 개인 브이앱에서 [ ]이 마지막 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체 콘텐츠를 찍고 있는 아티스트 본인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에 팬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며 자체 콘텐츠 없는 아이돌이 어딨냐면서 너무하다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별지 4>

## 이 사건 동영상 4의 내용

| | |
|---|---|
| 캡처화면 | |
| 제목 | |
| 내용 | ○이 ○○○ 멤버들을 1년간 설득한 게 있습니다.<br>바로 웹툰 사인데요. 가수로서 나갈 수 있는 음악 방송도 안 나가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br><br>그 웹툰 이름은 ○○로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br>이미 1월 15일부터 ○○○에서 연재가 시작됐고 ○○○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 ]은 [ ]을 편애하기로 유명한데 대기 초부터 [ ] 센터를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 ]에서도 당연히 [ ]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소위 쩌리 캐릭터고요

이 [ ] 웹툰에는 ost 도 있는데 당연히? [ ]의 솔로입니다. [ ]의 웹툰인데 한 멤버의 솔로곡만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 ]가 프로듀싱한 [ ]의 솔로 ost 는 2 월 5 일 공개되었는데 [ ]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홍보와 푸시를 해줬습니다. [ ] 컴백 때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 ] 솔로곡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의가 돋보입니다.

([ ]는) 코엑스 광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일본 시부야 109 광고, 스포티파이 광고, 트위터 광고, 유니버셜 뮤직 광고, 미국 최대 디지털 음악 매체 [ ] 광고, 미국 라디오 광고, 프랑스 온라인 스트리밍 광고, UK 스트리밍 광고, 틴더 광고, 미국 빌보드 지하철 광고, [ ] 메인 광고, [ ] 이버 웹툰 광고, 유튜브 프로모션 광고, 트위터 뮤직 광고, 틱톡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 광고 (를 진행했습니다)

[ ], [ ], [ ] 계정들을 전부 활용해서 [ ] 솔로곡 광고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해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홍보비에만 100 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 ]의 [ ] 솔로곡인데 **결과가 처참해서 화제입니다**. [ ]의 솔로곡은 발매 당일 멜론 28 위를 기록합니다. **엄청난 투자 홍보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순위인데 팬들도 외면했는지 지금은 95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아직 빌보드 차트 결과가 안 나와서 그 예상 차트가 나왔는데요. [ ]의 솔로곡은 빌보드 예측 사이트에서 18 위와 55 위를 했는데 순위가 중요한 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2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른 [ ]의 노래들도 그랬지만 세일즈(음원 다운로드)만 미친듯이 높고 **정작 대중들이 들어주는 스트리밍과 라디오 송출 횟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 ]의 빌보드 차트의 진실은 위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 ]으로 돌아가서 다른 팝 가수들의 노래 성적들을 아무리 봐도 [ ] [ ]처럼 세일즈만 높고 대중들이 소비하지 않는 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보다 낮은 순위가 예상되는 곡들도 그렇습니다.

**사재기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봐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런 짓은 한국 멜론에서나 하세요. **국위선양이 아닌 망신입니다. 사재기 다운로드로 겨우 이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빌보드가 최근에 사재기를 막겠다고 룰을 변경했는데 그것도 [ ] [ ]솔로곡 때문이었고, 하지만 여전히 사재기가 먹히는 상황이네요. 결국 돈만 미친 듯이 쓰면 다운로드 총공으로 빌보드 1 위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저번 [ ] 빌보드 사재기 영상에서 룰 변경하고도 1 위 하면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취소해야겠습니다. 어차피 성적 까보면 음원 다운로드만 80% 일 텐데 그게 가치가 있나요 [ ]들은 [ ]이 [ ] 솔로에 이렇게 진심인지 몰랐다. 차라리 홍보비 100 억으로 멤버들한테 나눠주지 그랬냐. 그룹 활동 때는 이렇게 안해주면서 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